

[※ 압기노트 추록]

[페이지는 2024년도 판을 기준 표시] [추가/변경된 부분에 밑줄표시함]

[p.1] III.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 <전부삭제>

[p.3] 제1절. 등기소 / II. 등기소의 관할 /

II. 등기소의 관할

- 상업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를 통칭하여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한다.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예> 서울시 내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
-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예.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도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고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여야 함; 2025. 1. 31.부터 시행).
- 재난발생 등으로 등기소에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그 등기소를 ‘비상등기소’라 함)에 대법원장이 ① 등기사무 정지를 명하거나 ②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① 등기사무의 정지명령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② 처분명령 권한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2015. 1. 31.부터 시행).

[p.4] 2.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중 /

- 지점에서는 : 본점 소재지 등기관이 폐쇄 부활 후 지점 소재지 등기관에게 통지하는 방식임
- < 지점에서는 ~ 부분 1행 삭제 >

[p.6] II.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2.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등기소 발급 중 /

- 인터넷등기소 : 열람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제출용’임을 표시하여 발급. 50장 초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지 않는다.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는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전자등기사항증명서’라 함)도 발급가능(단,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일부증명서는 불가하고 전부증명서 형태만 가능).

[p.7] I. 등기기록의 열람 중 /

- . 종이 폐쇄등기부 : 관할등기소에 출석 열람 원칙. 종이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이미지폐쇄등기부)에 의한 경우, 관할외 등기소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제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함(2025. 1. 31.부터 시행).
- . 인터넷에 의한 열람의 경우 특칙
 - 신청서 제출 불요. 단, 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에 의한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의 경우에는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제공하지 않음.

[p.7] II.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중 /

- 관할등기소에서 열람 신청. 단,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은 관할외 등기소에서도 가능. 한편,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열람’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회사의 대표자 등과 그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등기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 한하여 허용됨(2025. 1. 31.부터 시행).
- 열람 방법
 - . 전자적 방법의 열람 또는 기록된 서면 교부
 - . 종이 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열람. 등초본 발급 불가하나 사진촬영이 허용되므로, 인증없는 단순 사본 교부는 가능
 - .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함(2025. 1. 31.부터 시행).

[p.7]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중 /

- 공시제한하지 않는 예외
 - . 알거나 알 수 있음이 명백 :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제시¹⁾, 또는 직접 주민번호 입력

[각주] 1)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폐지됨(2025. 1. 31.부터 시행)

[p.8] 제5절. 인감증명 / I. 서설(의의) /

<전부교제>

I. 서설(의의)

-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회사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대리인·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 등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등 16조).
-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전자인감증명서’로 구분된다(전자인감증명서 제도는 2025. 1. 31.부터 시행). ‘인감증명서’란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하고, ‘전자인감증명서’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다.

[p.8~p.9] III.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전부교체>

III.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

- . 인감카드에 의해 신청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은 폐지됨; 2025. 1. 31.부터 시행)
- . '인감카드 & 비밀번호' 제시
- .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 별도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면 불요
- . 무인발급기 : 가능 (방식은 인감카드 & 비밀번호 제시)
- . 인터넷 발급 예약 가능 : 발급은 아니고, 발급예약 후 등기소에서 교부 청구 가능

-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2025. 1. 31.부터 시행)

-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 인감을 제출한 사람(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용도를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발급신청
- .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증(발급확인번호 등)'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지정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p.9] IV.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 / <전부삭제>

[p.10] 표 / <전부 교체>

구분	명칭	특징
	인감카드	.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HSM USB <보안토글 기능이 있는 전자증명서>	. 전자서명기능 .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은 2025. 1. 31.부터 폐지됨
	일반 USB <보안토글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	. 전자서명기능 .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원래 없음

[p.1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中 /
- 출석주의 (↔ 예외) 전자신청, 우편신청)
· 방문신청 : 원칙
· 전자신청 : 전자정보처리조직(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을 이용한 신청
· 우편신청 : 관공서의 촉탁

[p.12] II. 신청대리인 / -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제출 필요 中 /
→ 그렇지 않은 경우(예) 본·지점 공통 등가사형 등)에는 인감날인 불요. <삭제>

[p.13] I. 신청서의 작성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中 /
· 기명날인의 방법 : 당사자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 다만, 촉탁에 따른 등기 등 인감제출 의무가 없는 사항(상등 25조 3항)에는 적용하지 않음
· 서명? 대표자 개인 주소변경 등기신청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하다.

[p.14~p.15] II. 일괄신청 ~ III. 동시신청 / <전부 교체>
II.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2개 이상의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일괄신청이라 하고, 동시신청은 2개 이상의 등기를 일괄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등기신청서로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일괄신청은 동시신청이지만, 동시신청은 별개의 신청서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됨.

1. 일괄신청

(1) 일괄신청의 의의와 요건

- 일괄신청은 수개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하는 것.
- 일괄신청은 그 실질이 수 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각 등기기록별 또는 등기사항별로 별도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이하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이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할 수 있는 다른 등기의 허용범위가 달라 주의를 요함.

(2)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일괄신청

(가) 신청 등기소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음(2025. 1. 31.부터 시행)

(나) 신청사항(신청정보 제공) 및 일괄신청의 허용범위

(a) 기본신청 사항
관할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2025. 1. 31.부터 시행).

(b) 본점에 둔 지배인이 있는 경우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관할의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 허용).

(c)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각하사유)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도 변경하려는 상호가 동일상호에 해당(각하사유)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음(2025. 1. 31.부터 시행). 이 상호변경등기는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음.

(d)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a)~(c)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2. 동시신청

동시신청은 2개 이상의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일괄신청), 2개 이상의 등기신청서로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을 의미.

동시신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다음의 경우이다.

-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
-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
- ③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
- ④ 합병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
- ⑤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를 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와 새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의 신청(2025. 1. 31.부터 시행).

위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등등기법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3. 동시신청(일괄신청 포함)과 일부취하 또는 일부각하의 허용 여부

예를 들어 상호변경등기와 임원변경등기 등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거나 2개의 신청서로 연속하여 동시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여부는 각 신청사건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일괄신청 또는 동시신청된 사건 중 각하사유가 있는 일부신청에 대하여만 각하할 수 있고, 또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그 신청 중 일부를 취하할 수도 있음.

그러나, 회사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하여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신청 등과 같이 등기신청을 동시에 할 것이 강제되는 경우, 등기관은 일부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신청이 취하될 경우 나머지 신청도 상업등기법 26조 12호('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함(일부 각하/취하 불가).

[p.15] II.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中 /

다만, 인감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등기신청의 경우(예>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는 제출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삭제>

다만, 대표자의 개인주소변경등기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하므로 당연히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요하지 않는다.

[p.16~p.17] III.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中 /

IV.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중략)

. 국내 외국인등록자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국적, 성명, 생년월일(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증명 가능

- 해외동포

. 국적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의 예에 따른 것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성명, 생년월일(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

[p.17] IV.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부 교체>

V.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첨부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예> 취임승낙서 등), 이에 갈음하여 첨부서면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도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용도'란이 특정되어야 함

→ 용도란에 신청하는 등기유형(예> OO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됨

2.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자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고 함.

- 다만, 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등기첨부서류로 사용 불가).

[p.17] VI.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전부 교체>

VII.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도록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것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봄. 예를 들어 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이 면제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첨부서면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첨부서면의 제출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

[p.18] I. 서설 / <전부 교체>

I. 서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개인(改印))할 때에도 같다(상등 25조). 다만, ①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② 상호가등기, ③ 영입허락 취소,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미성년자 등기의 소멸등기, ④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법정대리인의 퇴임,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대리인 등기의 소멸등기, ⑤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등 상업등기법 25조 3항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의! 2025. 1. 31.부터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라는 항목이 삭제됨>

[p.19~p.2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전부 교체>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노트가 더 최신버전]

I. 전자신청의 개요

- 등기의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방문신청).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 ① 회사의 등기(단,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 ②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단,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 ③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합자조합과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 주의)
-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음(방문등기신청과 달리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음에 주의)
-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등기신청서라고 이해하면 됨)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함. 이때 등기 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회사의 설립등기, 회사 대표자의 변경등기의 경우 취임하는 회사대표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ID라고 이해하면 됨)도 함께 송신하여야 함
-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첨부서면이라 이해하면 됨)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함. 전자서명정보는 ①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송신(단,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가인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도 하여야 함(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하고, ②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하고, ③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인증서(행정전자서명)를 송신하여야 함
-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방문신청에 없던 절차를 요구. 이는 방문신청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이나 첨부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전자신청에서도 동일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 전자신청에서 등기신청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II.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

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예, 회사설립등기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사용자등록이 허용됨)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대표자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송신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예, 법무사등록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함.
-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소로부터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받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하고, 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함(기존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신청 필요).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2025. 1. 31.부터 시행).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최초 등록한 당시의 기간으로 함.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음
-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음

III. 전자증명서

- 정당한 신청권자에 의한 전자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의 입력을 통한 사용자인증 외에, 인증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증명서 제도가 도입됨. 전자증명서는 법인등기정보를 기초로 법인의 존재,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표권 등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서명 당시의 대표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기능까지 수행함(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 상열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예, 법인등기록에 등기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대표자, 지배인 등)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기존에 등기된 대표자, 지배인을 말함), ③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④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중복 발급 불가), 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이나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한편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모두 포함)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예, 전자공탁,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고 나면,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음(2025. 1. 31.부터 시행). 신청인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음(2025. 1. 31.부터 시행).

-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음.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효력정지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음.

-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하고,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됨

IV. 전자신청의 방법 : 전자문서,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등

1.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송신

-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첨부정보도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 신청정보의 전자문서화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

- 첨부정보의 전자문서화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①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의 사원,이사,감사,감사위원,회위원,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한 위임장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촬영)하여 송신할 수 있음

② 일반적인 첨부정보

㉢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 다만,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촬영)하여 송신 가능.

<관련선례.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포함)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함(자격자대리인이라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없음).

㉤ 공증인법 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 자체로 송신함(전자문서로 새로 생성하는 것 아님에 주의).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

㉦ 등록면허세납부확인정보 : 전자정부법 36조 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 이때 정보주체 본인은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정보제공 요구를 대리할 수 있음.

2.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함

- ① 법인 :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를 송신. 단,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가인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도 하여야 함(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 ② 개인 : 전자서명법 2조 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
- ③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인증서(행정전자서명)를 송신

- 한편,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공동대표이사 등의 경우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설립등기 또는 대표자변경등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함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납부.
- 전자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의 등의 결제 방법으로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

[p.24] III. 과태사항통지 中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과태료도 각각 부과되고, 본·지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각각 그 등기해태에 대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제>

[p.25] I. 등록면허세 中 /

- 수 개의 등기사항을 일괄신청하는 경우
 - . 각 등기사항별로 등록면허세를 합산이 원칙(예> 상호 & 목적 => 40,200원 + 40,200원)
 - . 설립등기의 경우 :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설립에 관한 등록면허세 1건만 납부.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까지도 포함.
 - . 지점 설치·이전·폐지 : 지점별로 별도 납부(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 납부).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설치시 중과지역/비중과지역이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중과세로 1건).
- 【예시】 ①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
- ②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 . 지배인의 등기 :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별도 납부(단,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경우만 제외).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인의 지배인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
- . 본점이전 :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납부(관할의 본점이전도 동일).

. 신주발행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일괄신청시 :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 등록면허세만 납부.

[p.25] II. 등록신청수수료 中 /

- 2개 이상의 등기사항 일괄신청시
 - . 합산의 원칙 : 등기목적사항 별 1개씩
 - . 법인 설립의 경우 : 지점, 지배인 등기 추가 관계없이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만 납부.
 - . 지배인, 지점의 경우 : 동일 관할 등기소 등기사항이라면 여러 지배인도 1개의 지배인 신청, 여러 지점도 1개의 지점 설치로 봄

[p.26]

- . 비송 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 :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 확정 -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확정에도 준용됨(비송 101조)
- . 비송 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 확정 -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
- . 비송 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 확정과 등기촉탁)
 - :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 확정 -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
- . 비송 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

[p.27]

- . 민사집행법 306조 (법원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점이전금지 가처분은 아님)

[p.28] 제2절. 등기사항의 기입 中 /

- 등기관은 접수번호(접수번호는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1년마다 새로 부여함)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청사항의 기입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름. 그러나 나중에 접수된 신청을 먼저 기입할 수도 있다. 다만, 동일한 등기기록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을 기입하지 않고서는 후에 접수된 신청을 기입할 수 없다.

[p.29] I. 등기신청의 취하 / <전부교제>

I. 등기신청의 취하

- 취하 :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 ∴ 등기관이 등기 완료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즉, 교합전)까지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취하 :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

- 취하의 방식

- 방문신청한 등기신청의 취하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
- 전자신청한 등기신청의 취하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필요). 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을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거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이고 각자 대표이면서 전자신청을 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p.30] III. 등기신청의 각하 中 /

11. 거처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11호) <삭제됨; 2025. 1. 31.부터 시행>
2025. 1. 31.부터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②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③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 등은 이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관할등기소에 속하지 아니한 등기도 함께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처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해당 각하사유가 삭제됨.

[p.34]

- 지점소재지 등기의 직권말소

- 본 지점 공동등기사항 : 위 직권말소절차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적용됨.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본점소재지 등기관으로부터 그 말소사실을 통지받아 지점소재지의 등기를 말소
-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 : 지점 소재지 등기관이 직권말소절차 없음
- 본 지점 공동등기사항이나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말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점 소재지 등기관이 직권말소절차 없음 <해당부분 전부 삭제>

[p.35]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中 /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이의신청은 ①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2025. 1. 31.부터 시행)으로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정보를 작성하고 이의 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함(이의신청에 대하여 전산처리가 원칙임을 선언; 2025. 1. 31.부터 시행).
- ▶ 등기관의 조치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 그 해당 처분을 해주면 됨. 단,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것에 대한 이의라면 이의가 이유 있다하더라도 ‘직권말소’ 가능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처분 가능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직권말소’가 불가능한 사유의 이의 신청
등기관은 이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정보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함. 다만, 전산장애 등의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음.

[p.37] 4. 동일상호 등기금지 中 /

(2) 요건

[타인이 등기한 상호]

-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는 한 모두 포함됨
→ 회사의 지점, 외국회사의 영업소,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파산중 회사의 상호라도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포함됨
- 상호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표시 부분’ 및 ‘병기된 로마자’는 제외하고 판단

[동일한 특별시 등에서]

- 타인이 등기한 상호등기의 관할등기소에서도 이해하면 99% 맞음

[동종영업]

- 목적 사업이 ‘완전히’ 다르면 해당 없음
→ 일부라도 겹치거나, 상호 포함관계일 경우 모두 동종영업으로 봄
(단,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는 상용구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겹치더라도 상관없음)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새로운 상호등기신청을 못한다’는 뜻임.
 - 상호등기, 설립등기, 상호가등기, 본점의 관할의 이전등기, 목적변경 등기신청 모두 이로 인하여 기존의 상호등기와 동일상호가 되는 결과를 일으키면 등기신청 불가
 - 다만, 새로운 등기신청이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일 경우에는 동일상호 판단을 하지 않음 → 등기됨

[p.38] 제2절. 상호신설/변경의 등기 관련 中 /

2. 상호등기가 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상호를 등기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등기(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의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상업등기법 30조 각 호 상호등기 사항의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의 제출도 필요하다.

등시신청된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3. 상호의 양도성

상호는 양도할 수 있지만, 영업과 함께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등기된 상호를 양수한 사람이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호의 속용과 면책등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면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영업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면책)의 등기 및 통지를 하여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p.39] 2. 절차도(특정만) / (3) 공탁(물취공탁) 부분에 /

(3) 공탁(물취공탁) : 관할 공탁소 특정 없음, 금전공탁(물품 X, 유가증권 X, 보증보험증권 X)

- 상호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의 신청서에는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25. 1. 31.부터 시행).
- 등기관은 공탁정보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41] (3) 공탁금의 운명 부분에 / 2번째 단락

- 그 외의 모든 가등기 말소시에는 국고 귀속(물취).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는 전산으로 하되 전산 장애등이 있으면 우편으로 관할 공탁소에 통지함.

[p.42]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中 /

[* 이하 각 관할의 영업소 이전 등기의 주의사항과 각 소멸등기 사유에 대한 신청인만 봄]

1. 관할의 영업소 이전 등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의 등기가 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등기(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의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상업등기법 30조 각 호 상호등기 사항의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의 제출도 필요하다.

동시신청된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2.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신청인

<내용은 그대로>

3.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신청인

<내용은 그대로>

[p.43] 2. 등기관 관련 주의 사항(총론) 中 /

——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이 아님

： 지배인을 둔 장소가 본점이면 본점등기기록, 지배인을 둔 장소가 지점이면 지점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본점과 관할이 같으면 본점등기기록, 다르면 별도의 지점등기기록)에만 등기할 사항
→ ∴ 우편신청 또는 본·지점 일괄신청의 적용이 없고, 반드시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 <해당 부분 전부 삭제>

<아래 추가>

- 개인상인의 지배인과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다름

지배인은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즉, 개인상인의 지배인은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지만, 회사의 지배인은 본점의 지배인이든 지점의 지배인이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p.44] 3. 지배인의 선임 / -등기절차 中 /

· 개인상인의 지배인은 ‘지배인등기부’에 등기,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은 ‘회사/합자조합의 등기부’의 ‘지배인란’에 등기

<아래 추가>

· 개인상인의 지배인은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지만, 회사의 지배인은 본점의 지배인이든 지점의 지배인이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함

[p.44] 4.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

—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 원인은 해당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등임

→ 해당 ‘본점 또는 지점’ 이전 등의 등기신청시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반드시 같이 하여야 함(동시신청 강제)

- 지배인 등기를 한 개인상인이 지배인을 둔 장소인 해당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등기신청 및 등기소의 처리(2025. 1. 31.부터 시행)

· 개인상인이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지배인 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동시신청된 위 등기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2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종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고, 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란에 이전의 뜻과 이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이전한 당해 영업소만 말소한다.

· 새 소재지에서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소재지에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지배인 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새 소재지에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란에 신 영업소 소재지 및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이전연월일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장소인 해당 영업소가 이전한 경우(2025. 1. 31.부터 시행)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하 ‘회사등’이라 함)의 지배인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므로 회사등의 본점 등기기록의 지배인란의 지배인을 둔 장소에 새로운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및 명칭)를 기재하고 종전 소재지를 말소한다(등기기록의 폐쇄사항·개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p.45] (2) 종류주식 / 단락 아래 추가 /

(3) 복수의결권주식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창업주에게 주식회사 1주 1의결권의 예외로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2023. 11. 17.시행)
-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 존속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대금 납입은 금전납부, 상계납입, 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기 보유한 보통주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 및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육성법 상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등기실부는 벤처기업도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결권주식’도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봄.

[p.47] 1번째 단락 ③ 교체

- ③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 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의 취급
 - a) 방법1 : 주주총회에 준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 의사록 공증 필요
 - b) 방법2 :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형식으로 작성
 - 공증은 하지 않고, 대신에 해당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관련선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그 업무집행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 (관련선례 : 서면결의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더불어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도 첨부함
 - (대표자 해임 처럼 법인인감 날인된 주주명부 첨부 불가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처럼 서면결의 진정성 보장이 될 경우에 한하여 법인인감 날인된 주주명부 첨부 생략 허용)

[p.47] 2. 주식회사 원시정관 관련 / (1) 절대적 기재사항 中

- ④ 고방법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정해야 함
 - 시사에 관한 (↔ 특정 업계 소식지 X)
 - 일간 신문 (↔ 주간, 월간 신문 X) [단, 정관에 ‘일간’이라는 문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추상적(예> ‘일간 신문에 한다’) X, 선택적(예>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에 한다’) X
 - [*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한다’는 가능]
 - 전자적 공고방법
 - 단, 홈페이지 주소 특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게재할 공고방법(관보 또는 특정 일간 신문)도 같이 기재하여야 함

[p.52~p.53] (4) 관외 본점이전의 등기절차 / <전부교체>

(4) 관외 본점이전의 등기절차 (2025. 1. 31.부터 시행)

1) 신청 등기소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사항(신청정보 제공) 및 일괄신청의 허용범위

- (a) 기본신청 사항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연월일
- (b) 본점에 둔 지배인이 있는 경우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c)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각하사유)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서도 변경하려는 상호가 동일상호에 해당(각하사유)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이 상호변경등기는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 (d)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a)~(c)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신청서 기재

- . 종전의 본점 소재지 : 신청서 양식 중 등기기록을 특정하는 부분의 ‘본점’란을 ‘종전 본점’란으로 하여 기재한다(‘등기할 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아님)
- . 등기할 사항 :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란에는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새 본점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
 - ②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 ③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4) 첨부서면

- . 이전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
 - ① 정관변경의 증명 → 주주총회 의사록
 - ② 구체적인 소재장소의 결정 → 이사회 의사록(원칙)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 / 대표이사 결정서(이사가 1~2인인 경우)
- . 관련 이슈> 인감의 제제출(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신고를 새로하여야 하는가?)
 - 구소재지 등기관이 신소재지 등기관에 인감자료 전자송부하므로 불요

5) 등기관의 처리

(a) 등기신청의 접수 및 처리등기소

종전 본점 소재지 또는 새 본점 소재지 중 어느 곳에서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b) 등기관의 조치

-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신·구조재지 관할 중 어느 곳이든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신청인의 신청사항을 등기)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등기관의 직권등기)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등기기록 폐쇄, 신규 개설이 없음에 주의).
- 관할의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당 상호등기신청이 관할의 본점이전이전등기와 동시에 접수되면, 종전 소재지 등기관은 본인의 관할에 속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 신청사건을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등기사건 처리 중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사건처리중'임을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

6)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종전 본점소재지 또는 새 본점소재지 중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를 말함)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하하여야 한다.

[p.53] 3. 본점이전등기 말소 관련 이슈 中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 <해당부분 삭제>

[p.54]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中/

등기기간 관련 : 기산점 관련 본점이전의 경우와 같은 내용 있음

본·지점 공통등기사항

· 원칙 : 본점에서 먼저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 따로 신청(우편신청 가능)

· 예외 : 본점에 등기신청할 때 일괄신청 가능

· 관련 이슈 > 지점의 변경이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해당 지점의 변경과 지배인란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 등기가 동시신청이 강제됨
(아때에는 지점의 변경에 대해서도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본점에서 지점의 변경등기만 먼저 한 후, 지점소재지에서 지점 변경 및 지배인
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우편신청/일괄신청 불가)

<위 해당부분 전부삭제 후 아래에 추가>

-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 (2025. 1. 31.부터 시행)

-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지점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 폐지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날이 될 것이나, 사전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이 기산점이 된다. 지점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설치일 이전의 날에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지점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도 마찬가지이다.
-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p.58] 3번째 줄 / <전면 교체>

- 주민등록번호 관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재외국민, 해외동포,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전	국내 거소 신고후
재외국민	생년월일로 등기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기
해외동포	생년월일로 등기	생년월일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기
외국인	생년월일로 등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등기

[p.65] 8)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기재 / <비교개념 추가>

8)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기재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종류주식의 내용’이 모두 등기할 사항
- ‘종류주식의 내용(무의결권,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기재한다.

(※ 비교개념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등기할 사항인데, ‘복수의결권의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이 아닌 ‘기타사항란’에 등기함)

[p.68]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 부여 한도 /

1) 부여 한도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불가 / 상장사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현재 100분의 15) 까지 / 벤처기업 100분의 50 까지

[p.68] <추가> /

3.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1) 개념 :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법).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음.

(2) 등기 : 정관 규정을 등기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①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④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⑤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함.
- 위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 설립시는 설립일로부터 2주 내에, 설립 후에는 정관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해당 정관의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과 달리 별도의 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사항란’에 등기.

[p.82] 5.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 (1) 의의 / 1) 개념 /

1) 개념 :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 때 등기기록의 직권 정리절차임

※ 마지막 등기? : 해당 법인의,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86] 2. 절차 및 등기 / (2) 절차 및 첨부서면 / [표] 안에서

등기신청	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2주일 내	
------	---------------------------	--

[p.89] (2) 신청방식 / 1) 등기기간 /

1) 등기기간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p.89] (2) 신청방식 / 3) 동시신청 中 /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이기는 하나, 이처럼 두 개의 회사의 등기가 이미 동시신청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본·지점 일괄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 <해당 내용 전부삭제>~~

[p.89] (2) 신청방식 / 2) 동시신청에 추가 /

-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선례)

원래 위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봄.

[p.89] 4. 등기소의 처리 / <전부 교체> /

4. 등기소의 처리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등기와 소멸회사의 등기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p.91] 첫 번째 줄의 [표] /

절차	특징	첨부서면
분할계획서 작성	- 서면 계획서 강제 - 기재사항 법정	분할계획서
사전공시 (분할계획서등)		
분할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의결권 제한 없음(무의결권 주식도) - 종류주총 - 특별히 불이익을 받게 될 주주 : 별도 동의	- 승인 결의 의사록 등
채권자보호절차	필요한 경우에 한함(후술함)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서면
주식병합/분할	분할비율이 1:1이 아닐 때 한함 분할회사 주식의 병합/분할을 위한 주권제출공고	주권제출공고 증명서면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	- 보고총회는 분할후 존속회사가 남는 경우 필요 - 보고사항만 있는 경우, 창립총회/보고총회 모두 '이사회 & 공고'로 갈음 가능	· 창립총회의사록/보고총회의사록 또는 · 이사회 의사록 & 공고증명서면 · 설립이므로 정관 등 설립에 필요한 서면도 첨부(정관은 원시정관이 아 닌 것으로 봄)
등기신청	등기가 효력요건임	- 신설회사 : 첨부서면 모두 - 존속회사 : 원용처리. 단, 존속회 사에만 필요한 서면은 별도첨부 - 소멸회사: 위임장 외 첨부서면 X

[p.91] 3. 등기신청 / (1) 신청인 / 4) 소멸회사 해산등기 /

- 4) 소멸회사 해산등기 :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 (인감제출의무도 없음)

[p.91] 3. 등기신청 / (2) 신청방식 / <전부 교체>

- 1) 등기기간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2) 동시신청

① 제출등기소 판단기준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② 사례 풀이(예규안)

Case		관할등기소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甲 회사 존속)		甲 또는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甲 회사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乙 회사와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乙 및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甲과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甲과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甲, 乙,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甲 또는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p.92] 3) 등기사항 中 /

- 존속회사 : 변경사항 & 분할신설회사(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 및 분할합병을 한 뜻 기재

[p.92] 4. 등기소의 처리 / <전부 교체>

4. 등기소의 처리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 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p.95] II -> 1. -> (2) 등기신청방식 -> 2) 등기기기간 및 3) 동시신청 / <전부교체>

2) 등기기간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3) 동시신청

- 유한회사 설립등기 + 주식회사 해산등기 : 모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동시신청

[p.106] 2. 법정청산 / [표] 안 /

등기신청	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2주일 내	
------	---------------------------	--

[p.113] 2. 영업소 설치의 등기 / (2) 등기기기간 /

- 그 설치일로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함. 단,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기간은 그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함

[p.113] 2. 영업소 설치의 등기 / (3) 등기사항 / <전부교체>

(3) 등기사항

1) 개요 :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④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 ⑦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⑧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⑨ 회사설립의 준거법, ⑩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세부내용

(a) 외국회사의 상호

- 당해 외국회사의 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 다만,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음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서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 유한, 합명, 합자 회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상호등기를 한 후 괄호 안에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음

(b) 외국회사의 목적 : 외국회사가 행하는 사업목적으로, 당해 외국회사가 한국 내에서 행하는 사업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등기

(c)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을 따라야 함.

(d)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 자본에 관한 사항은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에 등기사항이 아님

[p.115] 4.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중 /

- 현행법상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예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 현행법상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예

: 정비사업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임대사업자협회 및 주택임대관리업자협회

[p.116] 제2절. 법인등기 / 1. 법인등기의 근거법령 중 /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저점/분사무소 관련) : 상업등기와 같이 적용됨 <해당 부분 삭제>

[p.116] 제2절. 법인등기 / 2. 등기사항 관련 중 /

(* 감사의 경우 등기하는 경우가 특칙임 : OO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세무법인, 사내복지기금 - 감사가 등기사항)

[p.119] (3)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사 / <전부교체>

(3) 이사 권리의무행사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 이사 권리의무행사자 : 상법상 회사의 이사 권리의무행사자와 같은 개념 인정됨

. 관련 선례> 당원직 이사에 결원 사유 발생시 : 후임 이사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원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함

-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 등기사항 아님

. 관련 선례>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기존 사임이사의 등기

→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 신청

- 직무대행자 : 가치분 결정을 내린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함

[p.120]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중 추가 /

-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많은 부분 부동산등기법의 조항을 준용하나, 전자의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에 주의 (2025. 1. 31.부터 시행).